



: 2019-07-1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0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누58518 정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피항소인 방위사업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선고 2017구합8756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2. 14.

판 결 선 고 2019. 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의 처분을 취소 한다.



: 2019-07-12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설명서에는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원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즉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또는 제8조 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사유설명서에는 원고가 어떠한 직무상 자료를 활용하여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되는 발명을 하였는지에 관한 설명이 없다.

2)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사유설명서에는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결과, 원고가 참여한 사업의 회의 자료와 이 사건 특허가



: 2019-07-12

개념이나 내용 등에 있어 상당 부분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원고가 직무수행 중 지득 또는 취득한 비공개 사업 자료를 발명과정에 임의로 활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방위사업청 자체조사 결과인 방위사업청 소속 감사관이 2017.

1. 3. 작성한 이 사건 특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을 제12호증)에는 '원고가 기술 지원한 사업과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직무 관련성을 검토한바, AS 사업¹⁾과 AT 사업²⁾의 개발범위에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가 참석한 회의 안건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방위사업청 소속 감사관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2016. 11. 7. '제3, 6번 기재 특허의 등록 당시 특허청에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는지 여부'를, 2016. 12. 8. 제9번 기재 특허와 관련하여 '2013. 6.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개최된 AT 사업의 상세설계검토(CDR³⁾) 회의 안건에 런플렛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 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 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을 하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하였는지를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

1) AS 발사대, 탄약운반차, 유도탄, 무유도탄 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2) 보병부대의 기동성 · 생존성 · 타격력 향상을 위한 AT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3) Critical Design Review의 약자

4) 런플렛 타이어(Run Flat Tire)로, 이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제로가 되어도 정해진 속도로 일정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타이어를 말한다.



: 2019-07-12

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20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발명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리 및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에는 제3, 6, 9번 기재 특허가 원고가 기술 지원한 AS 사업과 AT 사업과 관계되는 발명을 기초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의하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특허 관련 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제3, 6, 9번 기재 특허에 관하여 원고의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 즉 직무발명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조사 당시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설명서를 교부받고 제3, 6, 9번 기재 특허에 관한 부분이 '직무발명'에 관한 신고절차를 규정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를, 나머지 특허



: 2019-07-12

인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에 관한 부분이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의 특허출원'에 관한 신고절차를 규정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1)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의 위반

가)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과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특허 중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중 원고가 이 사건 특허 중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의 출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의 위반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가 없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가 있으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 2019-07-12

(1) 원고가 방위사업청 C팀 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

(가)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15. 1. 22.까지 방위사업청 C팀에서 '기동 LSA⁵⁾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에 의하면, 방위사업청 C팀은 지상 전력에 대하여 종합군수지원(ILS⁶⁾) 개발 소요 및 기준의 검토(제1호), 종합군수지원 요소의 개발에 관한 업무체계의 조정 및 발전(제2호), 종합군수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검증 및 활용(제3호), 종합군수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제4호), 종합군수지원과 관련된 사업부서의 검토요청에 대한 기술지원(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다)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 근무 당시 AS 사업과 AT 사업 등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

(2) AS 사업과 AT 사업으로 개발된 종합군수지원요소

(가) AS 무기체계는 발사대, 탄약운반차, 유도탄, 무유도탄, 포드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AS 사업을 통해 '사격/적재훈련용 포드' 등이 종합군수지원요소로 개발되었다.

(나) AT 사업을 통해 '런플렛 타이어'가 종합군수지원요소로 개발되었다.

(3) 원고의 AS 사업과 AT 사업에 관한 회의 참석 및 회의 자료 검토

5) 군수지원분석(Logistics Support Analysis)은 무기체계의 수명주기에 걸쳐 군수지원요소를 확인, 분석, 구체화하는 활동이다.

6)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96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군수지원(Integrated Logistics Support)은 무기체계의 개발, 획득, 배치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지원사항으로 주장비와 병행하여 개발·확보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연구 및 설계반영(제1호), 표준화 및 호환성(제2호), 정비계획(제3호), 지원 장비(제4호), 보급지원(제5호), 군수인력운용(제6호), 군수지원교육(제7호), 기술교범(제8호),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제9호), 정비 및 보급시설(제10호), 기술자료 관리(제11호)이다.



: 2019-07-12

(가) 원고는 AS 사업과 관련하여 2010. 1. 2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기본설계검토(PDR⁷) 회의에 참석하였고, 2010. 6.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발사대와 탄약운반차 분야에 관한 상세설계검토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후 제4차 내지 제8차 종합군수지원 실무검토회의(ILS-MT⁸)에 참석하여 회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진행된 AT 사업의 상세설계검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자료를 검토하였다.

(4) AS 사업과 AT 사업의 회의 자료와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유사성

(가) 제3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별지2 도면과 같이 2012. 4. 2.부터 같은 달 3일까지 개최된 AS 사업의 제6차 종합군수지원 실무검토 회의 자료와 그 형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제6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별지3 도면과 같이 위 제6차 종합군수지원 실무검토 회의 자료와 별도 격실이 있는 것은 다르나 그 개발 개념이 동일하고 개발 기술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제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별지4 도면과 같이 2013. 6. 1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개최된 AT 사업의 상세설계검토 회의 자료로부터 런플렛 타이어의 적용 개발과 그 형상에 관하여 영향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8. 방위사업청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방위사업청 C팀에서 근무할 당시 진행된 AS 사업과 AT 사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기준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은 맞다. 이 사건 특허는 원고가 담당한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출원

7) Preliminary Design Review의 약자

8) Integrated Logistics Support - Management Team의 약자



원고는 자신의 처 명의로 N 제3번 기재 특허를, W 제6번 기재 특허를, AE 제9번 기재 특허를 각 출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1, 2,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방위사업청 C팀에서 근무할 당시 AS 사업과 AT 사업 등의 종합군수지원요소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원고는 위 사업에 관한 기본설계검討회의, 상세설계검讨 회의, 종합군수지원 실무검討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자료를 검토한 점, ③ AS 사업의 제6차 종합군수지원 실무검讨 회의 자료와 사이에, 제3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그 형상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제6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그 개발 개념이 동일하고 개발 기술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④ 제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AT 사업의 상세설계검讨 회의 자료로부터 런플랫 타이어의 적용 개발과 그 형상에 관하여 영향을 받았던 점, ⑤ 원고가 제3, 6, 9번 기재 특허를 출원한 시점은 AS 사업의 제6차 종합군수지원 실무검讨 회의와 AT 사업의 상세설계검讨 회의 이후로 위 회의 일자와 가까운 점, ⑥ 원고는 감사관찰 조사 당시 위 사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활용하여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발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중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 중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직무발명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직무발명에 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의 출원에 관하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승계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육군 D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30. 의원 전역하였고, 그 후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0. E로 임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징계 사유가 승계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군인사법 제1조는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는 군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1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제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그 공무원 신분'에서 바로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 후 사인(私人) 신분'으로 있다가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가 승계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을 하고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할 당시 육군 D으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군인사법 제1조, 제5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의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해당하였다.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 신분인 원고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을 하고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였으므로, 이러한 군인 신분으로서의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인 군인으로서의 행



위로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②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일반 사인 신분으로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일지라도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 공무원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행위와 같이 보아 징계 책임을 묻도록 징계 사유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군인 신분에서 의원 전역한 후 몇 개월 동안 민간 기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군인사법이 적용되던 군인 신분으로서의 행위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일반 사인 신분으로서의 행위와 같이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위와 같이 징계 사유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 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마.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에 관하여 위 각 특허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인 2017. 1. 18.자 징계의결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는 징계의결 요구 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때'를 의



미하는데, 원고가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을 하고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한 것은 계속법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가 위 신고를 하지 않는 동안 그 위반행위가 계속 존재하는바, 징계시효는 적어도 원고가 전역한 날인 2015. 11. 30. 전까지는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징계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는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을 하고 특허를 출원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를 위반한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직무발명을 한 날'이고,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제4, 5, 8, 10, 11, 12번 기재 특허출원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특허출원을 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이 이루어진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제3, 6, 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의 미신고 부분에 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늦어도 '특허출원을 한 날'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작위의무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사실상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위반행위자가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징계시효 기간을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의 출원일이 N(제3번 기재 특허), Q(제4번 기재 특허), T(제5번 기재 특허), W(제6번 기재 특허)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1. 18.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는 징계의결 요구일 이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 사유 중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는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제8 내지 12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만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할 당시 방위사업청 내에 공무원의 발명, 특허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특허출원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방위사업청 감사관실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이 사건 특허를 국가로 승계시키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사유화할 의사가 없었던 점, 원고는 군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E로 임용되기 이전의 군인 신분에서 이루어진 비위행위를 이 사건 징계 사유로 삼고 있는 점, 피고는 2018. 4. 25.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징계 사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중의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는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올 제8, 9,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8 내지 12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제9번 기재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은 원고의 직무와 관계가 있는 직무 발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자인 국가의 승계 기회를 차단시켜 국가의 지식재산을 사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무기체계개발과 관련한 회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력개선사업 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8, 10, 11, 12번 기재 특허를 출원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기도 하였다. 또한 징계시효가 완성된 제3 내지 6번 기재 특허에 관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또는 제8조 제2항의 위반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할 당시 방위사업청 내에 공무원의 발명, 특허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을 제12호증),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등 공무원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법령들은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의 출원은 N부터 AM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법령들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하기에 앞서 방위사업청에 사전에 질의를 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진지한 검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특허를 원고 명의가 아닌 자신의 처 명의로 출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특허의 기초가 된 발명을 하고 이 사건 특허를 출원할 당시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 제5조 또는 제8조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 위



반에 대하여 적어도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과 '정직'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징계 사유에 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원고에게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징계기준에 의하더라도 정직 3월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⑤ 원고는 2016. 4. 4. AU 주식회사에 경고장을 발송하여 제9번 기재 특허에 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관련 제조 품들을 수거 및 폐기하라.'라고 하였는바(을 제8, 12호증), 원고는 이 사건 특허를 사유화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는 2016. 12. 13. 방위사업청 감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특허의 국유화를 시도한 이유에 대하여 '특허 연차료 청구서가 오는 것을 보면서 특허를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을 제9호증), 원고가 이 사건 특허를 국가로 승계시킨 이유가 오로지 자신의 비위행위를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군인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19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E로 임용되기 이전의 군인 신분에서 이루어진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할 국가 지식재산의 엄격한 관리,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력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⑧ 피고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면



: 2019-07-12

직 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의 2018. 9. 18.자 결정을 통하여 위 면직 처분이 취소되었고(을 제11호증), 위와 같이 면직 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앞서 이루 어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제8 내지 12번 기재 특허에 관한 징계 사유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창훈

판사 김상우

판사 원의선



별지1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8조(징계 사유)

-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전의 해당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를 규율하는 법령상의 징계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장(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등 요구의 내용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혐의자의 비위(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증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1의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1]

징계기준(제2조 제1항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직무발명의 국가승계)

- ① 국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 ① 제5조 및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자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 2019-07-12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승계 발명의 출원)

-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자체 없이 발명기관의장을 부기하여 국가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발명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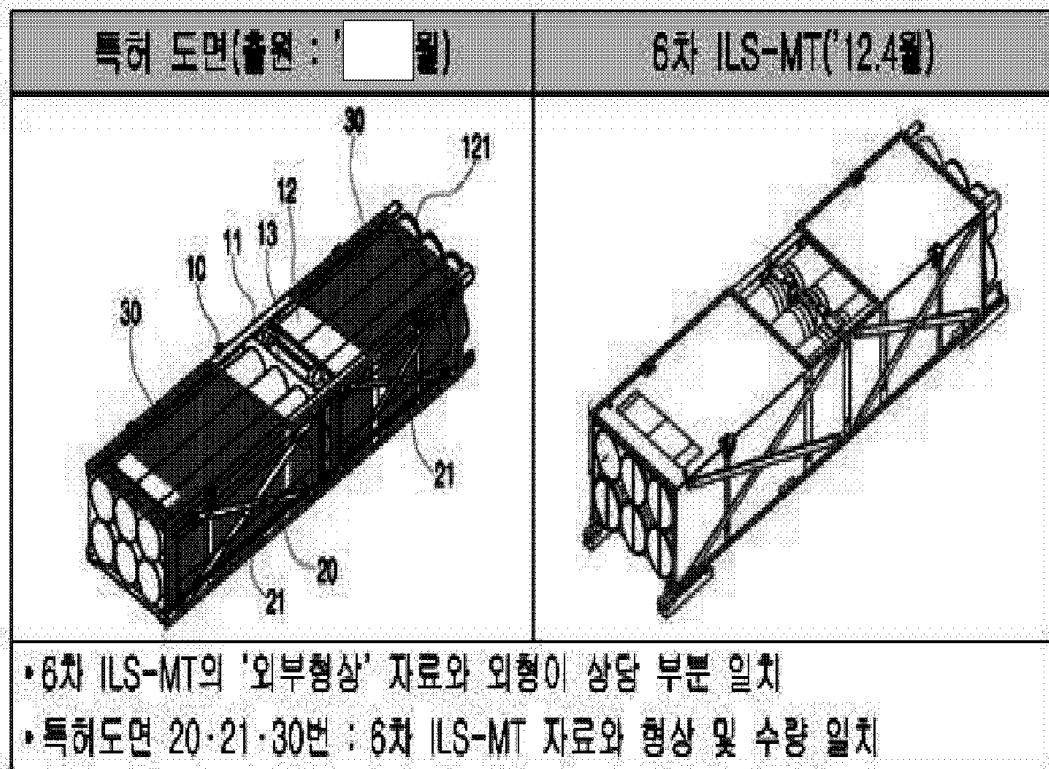
제8조(발명자의 출원)

- ① 발명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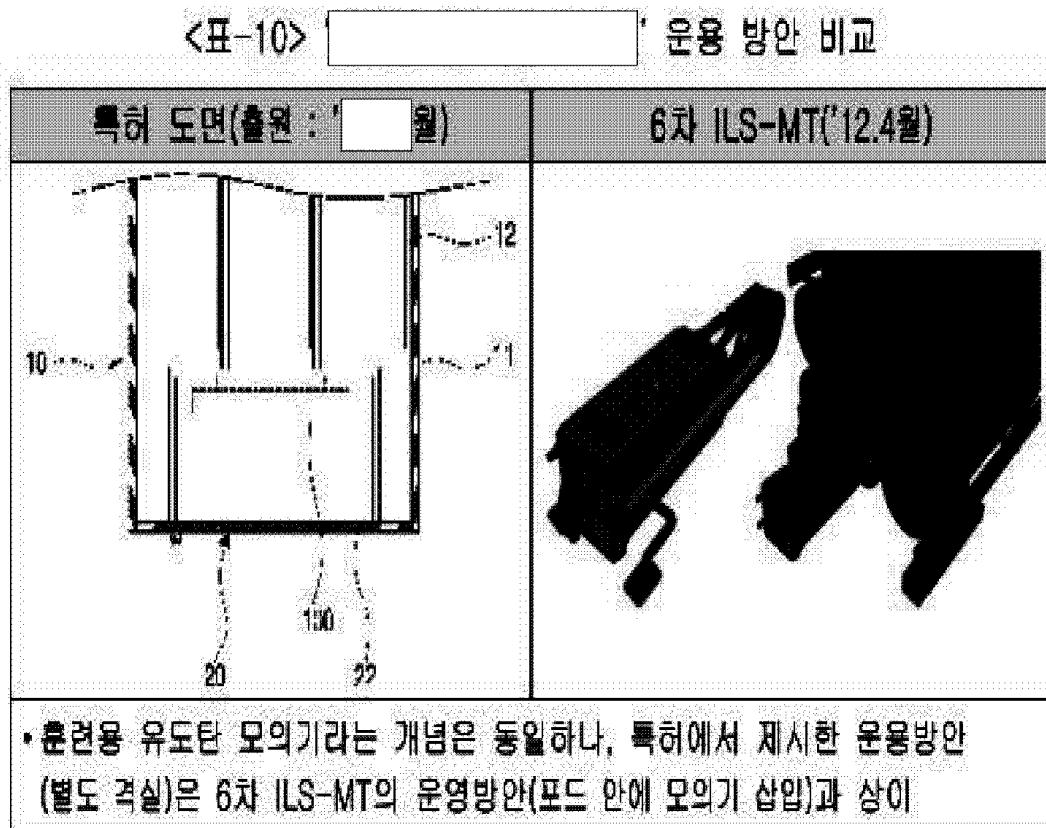
제3번 기재 특허 도면과 'AS 사업의 M'의 비교

<표-9> '_____' 형상 비교(일치 부분 :)



별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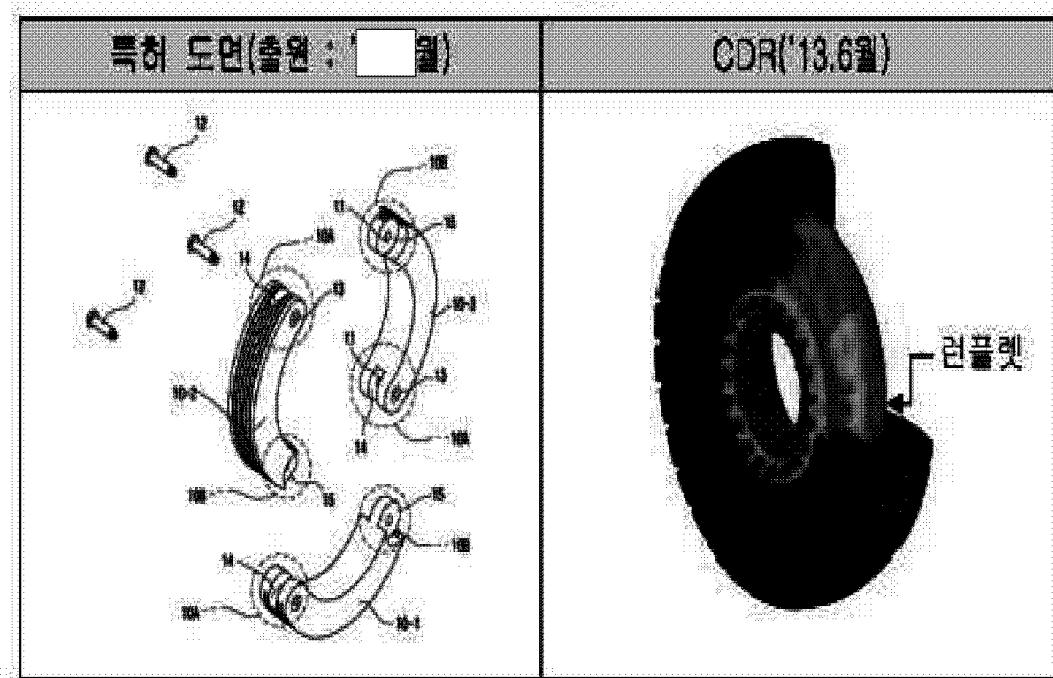
제6번 기재 특허 도면과 'AS 사업의 V'의 비교



별지4

제9번 기재 특허 도면과 'AT 사업의 런플렛 타이어'의 비교

〈표-11〉 '런플렛' 비교



끝.